

10.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지역별 산업별 차등화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참사와 자영업자 몰락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저생산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성상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만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에는 귀를 막고, 정부의 재정지원, 단기 일자리 창출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급속 인상의 부작용이 우리들의 생활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공공 단기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부족해지는 세수와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로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꺾지 않는 대통령. 과연 그 정부에서 창출한다는 공무원의 월급과 연금은 과연 누구의 돈으로 지급 되는 것입니까? 국가의 인구는 곧 자연감소를 앞두고 있어서 세수가 부족해 질 텐데, 축소해도 모자랄 공무원 일자리를 무리하게 만들고, 그들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날 것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로 카드사의 부실과 관련업계 근로자들의 고용 축소, 신용카드 사용 혜택 등의 비용 등을 모두 기업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최저임금의 차등화"로 제시합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낮게 정해진 업종은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혀 근로자 사이의 소외감과 벌어지는 불균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지역별 경영여건이나 경제상황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급여가 많아서가 아

됩니다. '내가 오늘 출근한 직장엔 내일도 출근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 덕분에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출산율 차이가 2배에 가깝습니다.(2018.09.10 조선일보) 급여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고용안정성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한 고용 안정성이 결국 1명 이하로 떨어진 출산율 문제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영세자영업자 뿐 아니라, 인구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한 단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로만 해고된 근로자라면, 다른 직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직장도 최저임금이 똑같이 올랐고, 저생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첫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30여년간 차등적용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긴 하지만, 법적 근거는 충분한 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은 지역, 업종,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도 특례대상과 적용제외대상을 두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차별운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의 영향률도 높아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낮고, 고용안정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국가에서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저임금, 저생산 노동자가 재취업기회가 줄어들어 소득재분배는 당연히 악화되게 됩니다.

또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일차적으로 근로자를 줄이고, 그래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그래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폐업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빚을 안지고 폐업하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정답을 정해놓았으니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물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와 고용 및 실업등 고용지표, 최저생계비 및 사회보장 급여 등 분배지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시급 만원"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옆은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국가경제 파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경제파탄으로부터 반드시 우리 국민들을 지키겠습니다.